나. 관계법령

○ 국가보훈 기본법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 8. 4.]

제18조(예우 및 지원의 원칙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.

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약칭: 국가유공자법)

제2조(예우의 기본이념)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(戰歿軍警)과 전상군경(戰傷軍警)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(龜鑑)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,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(榮譽)로운 생활이 유지·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.
[전문개정 2008. 3. 28.]

제3조(정부의 시책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·발전시키며,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.
[전문개정 2008. 3. 28.]

다. 2019년도 국가보훈처 보훈급여금(수당) 월지급액

2019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

□ 독립유공자

(단위 : 천원)

대상별				보상금	특별예우금 (순애기금)	합계
본인	건국훈장	1~3 등급		5,714	2,325	8,039
		4 등급		3,042	1,920	4,962
		5 등급		2,406	1,725	4,131
	건국포장			1,724	1,575	3,299
	대통령표창			1,132	1,575	2,707
유족	건국훈장	1~3 등급	배우자	2,531		2,531
			기타유족	2,191		2,191
		4 등급	배우자	1,865		1,865
			기타유족	1,826		1,826
		5 등급	배우자	1,518		1,518
			기타유족	1,483		1,483
	건국포장		배우자	1,066		1,066
			기타유족	1,059		1,059
	대통령표창		배우자	721		721
			기타유족	708		708
생활조정수당(*생활수준 고려, 신청시)				가족 3인이하 : 210~270, 4인이상 : 260~320		
생활지원금 (순애기금, *생활수준 고려, 신청시)				독립유공자의 (손)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·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,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468천원 · 기준 중위소득 70%이하 335천원		

□ 국가유공자 및 유족(기존 등록자)

○ 상이군경 등

(단위 : 천원)

상이등급별			보상금	수당		합계
				고령·무의탁	중상이부가	
상이군경	1급1항	고 령	2,927	97	2,195	5,219
		일 반	2,927	-	2,195	5,122
	1급2항	고 령	2,760	97	1,518	4,375
		일 반	2,760	-	1,518	4,278
	1급3항	고 령	2,642	97	925	3,664
		일 반	2,642	-	925	3,567
	2급	고 령	2,349	97		2,446
		일 반	2,349	-		2,349
	3급	고 령	2,195	97		2,292
		일 반	2,195	-		2,195
	4급	고 령	1,842	97		1,939
		일 반	1,842	-		1,842
	5급	무의탁	1,526	274		1,800
		고 령	1,526	97		1,623
		일 반	1,526	-		1,526
	6급1항	무의탁	1,392	274		1,666
		고 령	1,392	97		1,489
		일 반	1,392	-		1,392
	6급2항	무의탁	1,282	274		1,556
		고 령	1,282	97		1,379
		일 반	1,282	-		1,282
	7급	무의탁	453	274		727
		고 령	453	97		550
		일 반	453	-		453
	* 간 호 수 당		· 1급1항 2,387, 1급2항 2,296, 1급3항 2,208, 2급 763			
	* 전 상 수 당		· 23			
재일학도 의용군인		무의탁	1,282	274		1,556
		고 령	1,282	97		1,379
		일 반	1,282	-		1,282
4·19혁명공로자			· 311			
생활조정수당(*생활수준 고려, 신청시)			· 가족 3인이하 : 210~270, 4인이상 : 260~320			

○ 군경유족 등

(단위 : 천원)

대상별				보상금	수당	합계
유족	배우자	전몰·순직	무의탁	1,513	274	1,787
			무의탁부모부양	1,513	149	1,662
			고령	1,513	149	1,662
			일반	1,513	-	1,513
		상이1급~5급, 6급상이사망	무의탁	1,337	274	1,611
			무의탁부모부양	1,337	149	1,486
			고령	1,337	149	1,486
			일반	1,337	-	1,337
		6비상이, 7급상이사망	무의탁	490	274	764
			무의탁부모부양	490	149	639
			고령	490	149	639
			일반	490	-	490
		* 미성년자녀 양육수당		· 1인 양육 50 / 2인 양육 185 (추가 1인당 185 가산)		
	부모	전몰·순직	무의탁	1,486	274	1,760
			독자사망	1,486	274	1,760
			고령	1,486	97	1,583
			일반	1,486	-	1,486
		상이1급~5급, 6급상이사망	무의탁	1,315	274	1,589
			고령	1,315	97	1,412
			일반	1,315	-	1,315
		6급비상이, 7급상이사망	무의탁	465	274	739
			고령	465	97	562
			일반	465	-	465
		* 2명이상 사망수당		2인 사망 : 274 (1인 추가 시 274 가산)		
	미성년(성년장애)자녀	전몰·순직		1,754	-	1,754
		상이 1급~5급·6급상이사망		1,551	-	1,551
		6급비상이·7급상이사망		709	-	709
		* 미성년제매 양육수당		· 1인 양육 100/ 2인 양육 370 (추가 1인당 370 가산)		
생활조정수당(*생활수준 고려, 신청시)				· 가족 3인이하 : 210~270, 4인이상 : 260~320		
6·25 자녀수당				· 제적자녀 : 1,283(위로가산금 50추가), 승계자녀 : 1,091, · 신규승계자녀 : 257(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)		

□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

(단위 : 천원)

무공영예수당	· 인헌 360, 화랑 365, 충무 370, 을지 375, 태극 380
참전명예수당	· 300

□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

(단위 : 천원)

대상별	고도장애	중등도장애	경도장애
후유의증수당	934	689	452
후유증2세환자수당	1,664	1,292	1,038

□ 국가유공자 및 유족(2012. 7. 1.이후 등록자)

(단위 : 천원)

대 상 별			보상금	중상이부가수당	합계
상이자	1급 1항		2,927	2,195	5,122
	1급 2항		2,760	1,518	4,278
	1급 3항		2,642	925	3,567
	2 급		2,349		2,349
	3 급		2,195		2,195
	4 급		1,842		1,842
	5 급		1,526		1,526
	6급 1항		1,392		1,392
	6급 2항		1,282		1,282
	6급 3항		860		860
	7 급		453		453
	* 간 호 수 당		· 상시 2,387/ 수시 1,591		
	* 전 상 수 당		· 23		
	* 부양가족수당		· 배우자 100 / 자녀 100		
	* 고 령 수 당(60세이상)		·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		
유족	배우자	전몰·순직	1,513		1,513
		상이 1~5급	1,337		1,337
		상이 6급	490		490
	부모	전몰·순직	1,486		1,486
		상이 1~5급	1,315		1,315
		상이 6급	465		465
	미성년 (성년장애) 자녀	전몰·순직	1,754		1,754
		상이 1~5급	1,551		1,551
		상이 6급	709		709
	* 부양가족수당		· 자녀 100/ 제매 200		
	* 2명이상 사망수당		· 274		
	* 고 령 수 당(60세이상)		·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/ 부모 97		
생활조정수당(*생활수준 고려, 신청시)			· 가족 3인이하 : 210~270, 4인이상 : 260~320		

□ 보훈보상대상자

(단위 : 천원)

대 상 별			보상금	중상이부가수당	합계
상이자	1급 1항		2,049	1,537	3,586
	1급 2항		1,932	1,063	2,995
	1급 3항		1,849	647	2,496
	2 급		1,644		1,644
	3 급		1,537		1,537
	4 급		1,289		1,289
	5 급		1,068		1,068
	6급 1항		974		974
	6급 2항		897		897
	6급 3항		602		602
	7 급		317		317
	* 간 호 수 당		· 상시 2,387, 수시 1,591		
	* 부양가족수당(6급이상)		· 배우자 100 /자녀 100		
	* 고 령 수 당(60세이상)		·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		
유족	배우자	사망	1,059		1,059
		1~5급 유족	936		936
		6급 유족	343		343
	부모	사망	1,040		1,040
		1~5급 유족	921		921
		6급 유족	326		326
	미성년 (성년장애) 자녀	사망	1,228		1,228
		1~5급 유족	1,086		1,086
		6급 유족	496		496
	* 부양가족수당		· 자녀 100/제매 200		
	* 고 령 수 당(60세이상)		·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/ 부모 97		
생활 조정 수당(*생활수준 고려, 신청시)			· 가족 3인이하 : 210~270, 4인이상 : 260~320		

□ 사망일시금

(단위 : 천원)

<table>
<tr><th colspan="4">대 상 별</th><th>지급액</th><th colspan="4">대 상 별</th><th>지급액</th></tr>
<tr><td rowspan="5">독립유공자
본 인</td><td rowspan="3">건국
훈장</td><td colspan="2">1~3등급</td><td>3,268</td><td rowspan="4">상
이
군
경</td><td colspan="2">1급</td><td>1,704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4등급</td><td>3,208</td><td rowspan="3">2~7급</td><td>유족 보상금
비승계</td><td>1,444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5등급</td><td>1,704</td><td>유족 보상금
승계</td><td>1,127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건국포장</td><td>1,208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대통령표창</td><td>1,127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독립유공자
유 족</td><td rowspan="4">건국
훈장</td><td rowspan="2">1~3
등급</td><td>배우자</td><td>2,261</td><td colspan="3" rowspan="2">재 일 학 도 의 용 군</td><td rowspan="2">1,127</td></tr>
<tr><td>기타유족</td><td>2,200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4등급유족</td><td>1,989</td><td colspan="3" rowspan="2">보상금 지급대상 유족
(보상금 종결시)</td><td rowspan="2">1,127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5등급유족</td><td>1,127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건국포장유족
대통령표창유족</td><td>1,127</td></tr>
</table>